

일심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 항 - 급여계약

-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2 항 - 계약기간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될 수 있다.

3 항 -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1.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2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3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(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)

1 항 -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6.01.01)

① 방문요양의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 분 이상	17,450	150 분 이상	50,640
60 분 이상	25,320	180 분 이상	57,020
90 분 이상	34,120	210 분 이상	63,530
120 분 이상	43,430	240 분 이상	70,080

② 방문목욕의 1 회당 급여비용

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	목욕차량을 이용 (가정 내 목욕제공)	목욕차량을 이용 (차량 내 목욕제공)
50,100	80,230	88,990

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 등급	2 등급	3 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
4 등급	5 등급	인지지원 등급
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
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④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~9 %

(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)

1 항 -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

수급자의 상황 및 요청에 따라 수가 외의 비용이 발생했을 시 기관과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 협의 하에 비용을 책정하도록 한다.

(신원인수인, 수급자,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)

1 항 -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②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③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 항 -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3 항 - 수급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
- ③ 모든 생활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.
-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
- ⑤ 급여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4 항 - 수급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자가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
5 항 -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된 급여계획대로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(계약의 해지)

1 항 - 계약의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.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센터입소 등의 경우에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.
- 4.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5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※ 단,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4 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※ 단,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7 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